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및
홈플러스 월드컵점 계약해지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85
------	-----

2012. 6. .
재정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6월4일 채재선·김기덕의원 외 14명
-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7일
-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2012.6.2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채재선 의원)

1.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최저가격제 등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저임금

구조를 강요하고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까지 초토화시킴으로써 마을 공동체가 살아 갈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 확립을 저해하며 대규모 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100% 영국 자본인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운영할 합정점의 입점 철회를 촉구한다.

- 또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되어 시민의 편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월드컵경기장이 망원시장·망원동 월드컵시장 상인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특별시장에게 홈플러스 월드컵점의 계약을 해지하고 동 공간을 서울시민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 실시한 홈플러스 합정점의 주변상권분석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홈플러스 합정점은 지하철 2, 6호선의 환승역에 위치해 있고 초대형점이어서 이 일대 반경 1km뿐 아니라 강 건너 양평동, 당산동 지역까지 흡인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홈플러스 월드컵점 입점당시 20-30%, 2007년 3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망원점 입점시 10%의 매출 감소를 겪었던 망원시장을 비롯한 5개 전통시장 역시 30% 내외의 추가 매출 감소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임.

나.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1999년 당시 7조 6천억 원이던 주요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10년이 지난 2010년 33조 7천억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 반면 1999년 46조 원에 달하던 전통시장 매출은 10년이 지난 2010년 24조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정도로 재래시장과 영세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포기 당했고 지금도 위협받고 있음.

다. 100% 영국자본인 홈플러스 테스코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였지만, 마포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홈플러스 합정점을 개설등록하는 꼼수를 부렸고, 이제는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월 2회 휴업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과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서 맞서고 있으며, 자신들이 스스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에 해당한다고 등록하여 운영해오던 것을 이제는 쇼핑센터로 바꾸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령을 피해가려는 상식이하의 꼼수를 부리고 있고, 최저가격제 등을 통해 사회전반적으로 저임금구조를 강요하는 등 서울시민의 공동체적인 삶과 상생발전보다는 기업의 이윤극대화만을 꾀하고 있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기업임.

라. 서울시에 있는 64개소의 대형마트 중 유일하게 홈플러스 월드컵점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서울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위치해 있으며, 그 계약기간은 2003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20년간임.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되어 시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공간이 망원시장·망원동월드컵시장 상인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홈플러스월드컵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임.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가. 결의안의 개요

- 본 결의안은 망원시장을 비롯한 주변 5개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홈플러스 합정점의 입점철회와 함께 시민의 편익을 위해 건립되어 사용되어야 함에도 서울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부적절하게 대부되어 활용되고 있는 홈플러스 월드컵점의 계약해지를 통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것임.

나.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과 지역상권의 영향

- 마포구 합정동 일대 신축 주상복합건물 지하2층에 입점해 8월중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 홈플러스 합정점은 지하철역에서 바로 연결되는 매장면적 14,201㎡규모의 대형마트임.
- 홈플러스 합정점은 전통시장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마포구가 관련 조례를 개정(2011.4.21)하기 이전인 2010년 12월 개설신청을 하여 입점제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음.

- 마포구에는 이미 대형마트 8곳과 SSM 8곳이 영업을 하고 있어, 인근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를 비롯한 지역 골목상권이 붕괴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합정역 인근에는 이미 홈플러스 월드킵점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망원점이 자리해 전통상권의 상당부분을 잠식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 실시한 홈플러스 합정점 주변상권분석에 의하면, 홈플러스 월드킵점 입점 당시 이미 20~30%의 매출하락을 경험한 주변상권은 2007년 3월 입점한 홈플러스익스프레스망원점 입점으로 10%의 추가적인 매출하락을 겪었고, 예정대로 홈플러스 합정점이 입점할 경우 망원시장을 비롯한 5개 전통시장은 30%의 매출하락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음.
- 이처럼,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의 붕괴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상인은 입점을 막기 위한 활동을 개시하였고, 마포구 역시 여러차례 상인과 홈플러스와의 접촉을 통해 홈플러스의 입점철회 촉구 및 업종전환 권고 등을 시행하였음.
- 마포구의회의에서도 지난 2월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철회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등 자치구, 구의회, 지역 상인회가 여러차례 입점철회와 업종전환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홈플러스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며, 현재 중소기업청 사업조정 절차가 진행중임.

다. 홈플러스 월드컵점의 운영 현황

- 홈플러스 월드컵점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끝난 직후인 2002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과 당시 한국 까르푸(주) 사이에 맺어진 대부계약에 따라 2023년 4월까지 20년간 할인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임.
- 홈플러스 월드컵점은 매년 약 2천5백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해 국내 127개 홈플러스 매장 가운데 매출액 기준으로 최고 수준의 매장임.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과 까르푸가 맺은 대부계약서 제26조는 계약 해지의 사유로 주요한 계약위반 사항을 들고 있으며, 이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는 현재 시점에서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계약해지는 용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결국 홈플러스 월드컵점의 원활한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홈플러스측의 자발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계약해지에 대한 판단에는 대규모 월드컵경기장의 대규모 공간 활용방안도 사전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라. 결의안의 취지와 대응방안

- 그 동안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사업조정,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다양한 법·제도가 도입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가맹점 형태를 통한 위장 입점, 편의점을 표방한 실질적 SSM 진출, 다른 사업자의 소유권 매수를 통한 우회 출점 등 각종 편법·위장입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전통상권 잠식은 그치지 않아 왔음.
- 본 결의안은 제한된 상권에 특정 브랜드의 대형유통기업이 주변 상권의 붕괴를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진출해 지역경제의 기반을 붕괴하고 있는 상황을 제어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될 것임.
- 비록 입점철회나 업종전환유도와 같은 즉각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기반 붕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향후 사업조정 등의 절차에서 위기에 처한 지역상인들의 입장을 일부 대변하며, 나아가 거대 유통기업의 태도 변화를 압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및 홈플러스 월드컵점 계약해지 촉구 결의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기를 희망합니다. 위대한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슨은 “진정한 성공이란 우리가 한 때 이 곳에 살았음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대자본을 등에 업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무차별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마포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중인 홈플러스 월드컵점에서 불과 2.3km 떨어진 곳에 합정점을 올 8월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실시한 홈플러스 합정점의 주변상권분석 조사결과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홈플러스 합정점이 지하철 2, 6호선의 환승역에 위치해 있고 초대형점이어서 이 일대 반경 1km뿐 아니라 강 건너 양평동, 당산동 지역까지 흡인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홈플러스 월드컵점 입점당시 20-30%, 2007년 3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망원점 입점시 10%의 매출 감소를 겪었던 망원시장을 비롯한 인근의 5개 전통시장 역시 30% 내외의 추가 매출 감소를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1999년 당시 7조 6천억 원이던 주요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10년이 지난 2010년 33조 7천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 반면 1999년 46조 원에 달하던 전통시장 매출은 10년이 지난 2010년 24조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정도로 재래시장과 영세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포기 당했고 지금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100% 영국자본인 홈플러스 테스코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였지만, 마포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홈플러스 합정점을 개설등록하는

꼼수를 부렸고, 이제는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월 2회 휴업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과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서 맞서고 있으며, 자신들이 스스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에 해당한다고 등록하여 운영해오던 것을 이제는 쇼핑센터로 바꾸어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 법령을 피해가려는 상식이하의 꼼수를 부리고 있고, 최저가격제 등을 통해 사회전반적으로 저임금구조를 강요하는 등 서울시민의 공동체적인 삶과 상생발전보다는 기업의 이윤극대화만을 꾀하고 있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전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최저가격제 등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저임금구조를 강요하고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까지 초토화시킴으로써 마을공동체가 살아 갈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 확립을 저해하며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100% 영국자본인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운영할 합정점의 입점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 또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되어 시민의 편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월드컵경기장이 망원시장·망원동 월드컵시장 상인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특별시장에게 홈플러스 월드컵점의 계약을 해지하고 동 공간을 서울시민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6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